## 부산광역시 사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이유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기간 동안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던 실비변상 금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지급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가.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변상 지급 기준 개정(안 제8조 제1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던 실비변상 금액을 회기수당 일비 상당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되, 의원인 위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3. 참고사항

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2조

나.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공문

### 4. 검토의견

본 조례 개정안은 매년 실시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결산검사 기간동안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해오던 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 그동안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관련 조례에 의거 사하구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일비 상당액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올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으로써 기존의 결산검사위원 수당 지급기준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것임

○ 현재「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지급 되는 사하구의 각종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지급기준은 1일 7만원 정도로 작년에 지급된 결산검사위원의 참석수당과도 같은 금액임

○ 다만 작년 경우 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이 상향 조정(1일 7만원 ⇒ 10만원) 됨으로써 자연히 올해부터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위원의 참석수당도 상향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 올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해보지도 못하고 작년과 동일하게 지급함에 따라 다소 아쉬운 점도 있으나 이는 법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해될 수 있어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그 동안 구의회 의원의 결산검사 참여시 회기수당과는 별도로 실비변상 차원에서 결산검사 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올해는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의회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지급되는 연봉적인 성격의 월정수당이 신설 대체됨으로 인해 의원의 참석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됨

○ 이는 공직의 연장선상에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한 구 소속 공무원에게는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토록 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의 규정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음